

시간강사위촉 규정

- 제정 : 1999. 3. 1. □ 개정 : 2006. 3. 1.
- 개정 : 2003. 3. 1. □ 개정 : 2011. 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시간강사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강사라 함은 본교의 전임·초빙·겸임·기타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제3조(위촉조건) 본교 학생의 교육을 맡을 전임교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개설 교과목의 강의에 적격한 전임교수가 없을 경우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해당과목의 전공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강의경력 1년 이상인자.
2.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중 석사학위이상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학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전공과 관련 근무한 자를 소속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촉절차 및 방법) ① 학과장은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간강사를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전 실험실습시간표 제출시 교무과에 통보, 승인을 요청 한다.

② 승인요청시 담당과목명, 시간수, 신규, 유임, 타대학 전임(소속 표기)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③ 시간강사의 위촉은 개강 2주전 총장에게 위촉을 품의한다. 단, 학기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품의해야 한다.

제6조(위촉제한) 다음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 4조의 자격이 있더라도 강사로 위촉될 수 없다.

1. 인사서류 부실작성 또는 허위기재로 위촉된 자.
2. 전(前)학기의 강의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교수능력이 극히 부족한 자.
3. 전(前)학기의 출강률이 2/3에 미달한 자.
4. 교육관계법령 준수 또는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5. 재임용 직전학기의 강의평가가 저조하다고 판정된 자.
6. 기타 총장이 시간강사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7조(구비서류) ① 신임 강사 위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추천서 1부

② 유임된 위촉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및 이력서 각 1부

제8조(임용) ① 시간강사의 임용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시간강사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단 추천자 요청에 의해 총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담당시간) 시간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12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학과장은 강사의 위촉을 추천할 때 이에 따른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총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 부득이한 경우로 위촉한 시간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은 교무처에 경유하여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해임) ① 시간강사는 강의하는 학기의 종료와 동시에 해임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품의를 통해 학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

1. 수업에 충실치 않을 때
2. 교수능력이 부족할 때
3.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을 때
4. 본교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제12조(의무) ① 위촉된 시간강사는 본교의 학사력에 따라 담당과목의 강의와 수강학생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수업 시간전에 출강하여 자신이 직접 출강부에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사정에 의해 결강, 휴강이 요구될 때에는 강의시간전에 교무과에 신고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강시 또는 출강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결강으로 처리하여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보강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수업을 실시한 후에는 교무과에 보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간강사는 강사 인사기록카드(이하 강사추천서라 한다)에 기재한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경력, 학력, 주소 등) 이를 즉시 교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강사의 강사료) 국내·외 저명인사 및 산업체 초빙인사의 특별강사료는 적정수준에서 총장이 결정한다.

제14조(강사료)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